##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0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전재수ㆍ이용선ㆍ고영인

최인호 · 박재호 · 이병훈

김정호 · 김홍걸 · 노웅래

허 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 정임.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의 활력 제고와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는 청년시설의 경우 내셔널 미니멈이 부재하여 지역별로 거주하는 청년 간의 서비스 차이가존재하는 실정임.

현행법은 청년단체와 시설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국가 적 책임 소재가 미흡하고 이는 곧 복지서비스와 청년을 최근접거리에 서 지원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미비로 이어짐.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의 경우 관련 단체와 시설 설치에 관해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신설).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청년단체"란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6. "청년시설"이란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청년단체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년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7조(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자립 및 삶의 질 향상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청년단체"란 청년 참여의 촉
	진과 청년의 발전을 주된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
	하는 단체를 말한다.
<u>&lt;신 설&gt;</u>	6. "청년시설"이란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u>제5장</u> 보칙	제5장 <u>청년단체의 지원 등</u>
<u>&lt;신 설&gt;</u>	제25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
	전을 위하여 청년단체가 추진하
	는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
	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년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신 설>

<신 설>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정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관리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제27조(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 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 고, 청년의 역량강화,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u><신 설></u> 제25조 ~ 제28조 (생 략)

<신 설>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 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u>제28조</u> ~ <u>제31조</u> (현행 제25조부 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32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